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080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상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혜, 지혜영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과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18. 8. 3.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60,3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2019. 5.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3. 6. 24.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합계 7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2020. 4. 8. 현재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번	대출일	대출원리금	원금 잔액	총 이자
1	2013. 6. 24.	17,866,958원	17,000,000원	866,958원
2	2015. 9. 21.	13,740,513원	13,000,000원	740,513원
3	2016. 4. 5.	4,597,523원	4,400,000원	197,523원
4	2017. 10. 28.	35,455,315원	34,000,000원	1,455,315원
합계		71,660,309원		

나. 망인은 2018. 8.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9.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7. 11. 24.경 망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가 2018. 8. 13.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2018. 11. 27. 협의이혼 하였다.

라. 피고는 D, E에 대하여 망인과의 부정행위로 피고와 망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0. 2. 14. D, E은 각 1,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35033호), D, E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가정법원 2020르104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 5,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인 2018. 8. 3.경 원고는 이미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증여는 2018. 8. 3.에 이루어졌고 망인과 피고는 2018. 8. 13.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2018. 11. 27.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피고가 받은 재산분할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72,5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액 63,869,588원을 공제한 108,630,412원인 사실, 망인과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의 기여분을 50%로 산정할 경우 피고가 받을 재산분할 가액은 71,870,206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받은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와 망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어머니인 F 소유이다가 2008. 5. 9.경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재산으로 그 취득에 있어 피고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의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서 피고가 망인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1명, 성년인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는 곳인 점, 피고는 망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부분과 피고와 망인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 순재산액의 50%를 초과한다고 하여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남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아산시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충남 아산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113.8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남 아산시 대 6864㎡

2. 충남 아산시 대 8217㎡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5081분의 55.6234

이상.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소유	구분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인정 근거
망인	적극 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172,500,000	갑 1, 을 7
		2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 임대차보증금	20,000,000	을 13
		3	공무원 퇴직급여채권	83,510,000	을 14
	소극 재산	1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채무	63,869,588	을 8
		2	원고에 대한 채무	68,400,000	갑 2, 3
	망인 순재산 합계			143,740,412	
피고	피고 순재산 합계			0	
계산	망인과 피고 순재산 합계			143,740,412	
	피고 기여분(50%로 산정시)			71,870,206	

